#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84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이인선·박성훈·김위상

정동만 • 박덕흠 • 조정훈

박충권 • 이양수 • 강명구

김기웅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성실 세무 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세무사법」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권의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1항).

법률 제 호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7제1항 본문 중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라 통지받아야 하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지(이하"를 "통지(세무사에 대한 통지는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 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기신청 등) 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 -----납세자(납세자가 제 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 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 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 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라 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 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 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 무대리 업무를 등록한 공인회 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 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 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 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 ----통지(세무사에 대한 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통지는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로 한정한다. 이하-----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             |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